

● 국토교통부 공고	제2022-1111호
기획재정부 공고	제2022-160호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	제2022-0838호
행정안전부 공고	제2022-662호
산업통상자원부 공고	제2022-626호
환경부 공고	제2022-468호
고용노동부 공고	제2022-356호
소방청 공고	제2022-144호
조달청 공고	제2022-223호
문화재청 공고	제2022-304호
공정거래위원회 공고	제2022-148호

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

2022년 8월 12일 발표한 「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」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26일
 국토교통부장관
 기획재정부장관
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 행정안전부장관
 산업통상자원부장관
 환경부장관
 고용노동부장관
 소방청장
 조달청장
 문화재청장
 공정거래위원장

I. 특별조치의 취지

- 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, 과징금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각종 부조리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
- ☐ 그러나 당해 행정제재 및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이 제한되어
 -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
- ☐ 따라서, 그 동안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,
 -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, 부실시공행위,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, 불법하도급, 담합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,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처분은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

II. 특별조치의 대상

1. 건설관련업체

- ☐ 개요
 -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(시공·엔지니어링·유지관리, 이하 동일)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
- ☐ 해당업체
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사업자
 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

-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사무소
-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, 국토안전관리원
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
 - *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‘건설’ 부문 외의 분야 중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도 포함
- 「기술사법」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
 - * 「기술사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‘건설’ 부문 외의 분야 중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도 포함
-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업자
- 「전력기술관리법」에 따른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정보통신용역업자
-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업자
 - *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포함
-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, 문화재실측설계업자, 문화재감리업자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
 - * 이 공고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인한 제재조치의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건설관련이 아닌 업체도 일부 포함

2. 건설기술인

□ 개요

- 2022.8.14.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인
 -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
 -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에 계속 재직하지 않아도 대상임

□ 해당기술인
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설기술인
-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
-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
- 「전력기술관리법」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
-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
-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,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감리원
-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인

Ⅲ.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

1. 해제 대상 행정처분

☐ 개요

- 2022.8.14. 이전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인이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(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 감점을 포함, 이하 동일)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

*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을 대상으로 하며, 영업정지·자격정지·업무정지 등에 따른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대상에 해당

- 2022.8.14.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, 2022.8.14.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22.8.14.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

* 소송·집행정지 등 신청·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'22.8.14. 이전에 부과된 경우 해당

☐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

- 부정당업자 제재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*

* 부정당업자 제재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입찰 관련 감점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제2호가목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의무

- 영업정지·자격정지·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
- 과징금, 과태료, 벌금, 시정명령, 벌점,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
-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* 등 불이익조치

* (예시)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(PQ)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: 표준 하도급계약서 미사용시 감점, 종합심사낙찰제심사세부기준 : 계약신뢰도 (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등) 감점 등

※ 단,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, 자격취소는 제외

※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처분의 경우 벌점 누적으로 부과되어 2022.8.14. 현재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제한만 해제대상에 포함

2.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

- ☐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 및 입찰참가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

-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

-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

-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영업정지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
- 지방공기업법 제64조 제4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
-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

-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등

-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·과징금
-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·조작·부당·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·조작·부당·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

-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
-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벌점
-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부실벌점
-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, 제4호, 제10호, 제48조 및 제49조 제1항 제2호, 제8호, 제8의2호, 제12호, 제13호, 제16호 관련 행정처분
-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

○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자격증·경력증의 대여행위

-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영업정지·과징금
-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
-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격정지
- * 법률 제13899호 개정 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격정지 포함
-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정정지
-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68조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
-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
-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
-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, 제7의2호에 의한 자격정지와 제48조에 의한 자격정지 및 제49조 제1항 제7호, 제9호에 의한 영업정지
- 기타 개별법령에서 자격증·경력증 대여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

○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
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(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의한 시정조치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과징금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정한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정한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기타 개별법령에서 담합을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

○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하도급 행위
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정한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정한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 내지 제5항,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한 불법하도급에 따른 행정처분
- 기타 개별법령에서 불법하도급을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

○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행위
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
-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
-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따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
-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, 제39조제1항, 제51조, 제54조제1항, 제63조, 제117조제1항, 제118조 제1항, 제122조제1항, 제157조제3항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(단, 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은 제재조치 해제 범위에 포함)
-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
- 기타 개별법령에서 중대재해 위반을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

○ 환경관련 법령 위반행위

- 소음·진동관리법 제56조 내지 제59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-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제36조, 제37조, 제89조 내지 제93조, 제95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-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, 제26조, 제62조 내지 제65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- 물환경보전법 제64조, 제43조·제66조, 제75조 내지 제81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- 폐기물관리법 제27조, 제14조의2·제28조·제46조의2, 제63조 내지 제6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5항 에 따른 행정처분
- 기타 환경 관련 개별법령 위반을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

IV.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

1. 개요

- ☐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2.8.15.자로 해제
- ☐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
 - 이미 처분된 과징금, 과태료, 벌금, 시정명령 등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, 기타 민·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음

2.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

- ☐ 부정당업자 제재, 영업정지·자격정지·업무정지
 - 2022.8.14.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,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, 자격정지 처분은 2022.8.15. 자로 해제
 - ※ 2022.8.14. 이전에 처분기간이 만료되어 입찰 시 감점 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가목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

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2022.8.15. 자로 해당 감점 및 입찰보증금 납부의무 해제

-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22.8.15. 자로 해제

※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

☐ 별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

- 2022.8.14. 이전에 부과된 별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2.8.15. 자로 해제
- 2022.8.14. 이전에 부과된 별점에 근거하여 2022.8.15.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

☐ 과징금·과태료에 따른 입찰자격제한

- 2022.8.14.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·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,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2.8.15. 자로 해제
- ※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·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

☐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

- 2022.8.14.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,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2.8.15. 자로 해제
- 2022.8.14.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22.8.15. 이후에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22.8.15.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

- 2022.8.14.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,
-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22.8.15.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

☐ 경고처분

- 2022.8.14.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2.8.15. 자로 해제
- 다만,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2022.8.15. 이후에 경고처분 및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
- ※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고처분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

☐ 기타

-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(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) 등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22.8.14. 이전에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 2022.8.15. 자로 해제
- 벌금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은 해제되나, 벌금 등은 납부하여야 함
- ※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 등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

3. 입찰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에 대한 경과조치

- ☐ 2022.8.15.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부터 적용
 - ※ 단,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우 제한여부 판단기준일이 2022.8.15. 이후인 경우에는 공고일이 2022.8.14. 이전이더라도 특별조치 적용
- ☐ 다만, 2022.8.15.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 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 중 2022.8.25.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
V.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

1. 시행방법

- ☐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,
 -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,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·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
- ☐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
- ☐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,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,
 - 2022.8.14.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
- ☐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
 - 관련 기록에 「2022.8.15.일자 2022년 광복절 특별해제조치」라는 내용 표기
- ☐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·관리함

2. 결과의 확인신청

- ☐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인은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,
- 2022.8.29일부터 9.5일까지 별지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
- ☐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,
- 해제대상인 경우, 2022.9.7일까지 관련 기록에 부기하고,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·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
 -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

3. 질의

- ☐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

소관 사항	담당부서	담당자
○건설사업자(건설산업기본법)	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김호석 사무관(☎044-201-4597) 김소라 주무관(☎044-201-3506)
○건설엔지니어링업자(건설기술 진흥법)	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	김종현 사무관(☎044-201-3566) 김도형 주무관(☎044-201-3567)
○건설기술인(건설기술 진흥법)	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	장미선 사무관(☎044-201-3555) 황일훈 주무관(☎044-201-3556)
○안전진단전문기관(시설물안전법)	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	송하윤 사무관(☎044-201-4594) 박철희 주무관(☎044-201-3583)
○건축사 및 건축사 사무소(건축사법)	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	손수진 사무관(☎044-201-3776) 김대년 주무관(☎044-201-3777)
○엔지니어링 업체, 기술자 (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)	산업부 엔지니어링 디자인과	주다름 사무관(☎044-203-4509)

소관 사항	담당부서	담당자
○국가기술자격자(국가기술자격법)	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	이정형 사무관(☎044-202-7290) 전영은 전문위원(☎044-202-7298)
○기술사(기술사법)	과기부 과학기술 안전기반팀	남민우 사무관(☎044-202-4851) 홍윤아 주무관(☎044-202-4853)
○전기공사업자, 기술자 (전기공사업법) ○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,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(전력기술관리법)	산업부 전력산업 정책과	이태욱 사무관(☎044-203-3895) 이금배 주무관(☎044-203-3896)
○정보통신공사업자, 기술자(정보통신공사업법)	과기부 네트워크정책과	석지윤 주무관(☎044-202-6424)
○소방시설업자, 기술자(소방시설공사업법)	소방청 소방산업과	안경섭 소방위(☎044-205-7507)
○소방시설 관리업자, 소방시설 관리자 (소방시설법)	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	홍성일 소방경(☎044-205-7522)
○문화재 수리업자, 기술(능)자(문화재수리법)	문화재청 수리기술과	전의건 사무관(☎042-481-4866) 조성규 주무관(☎042-481-4873)
○부정당업자 제재(국가계약법)	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	이윤태 사무관(☎044-215-5212)
	조달청 시설총괄과	이경달 사무관(☎042-724-7585) 김민섭 주무관(☎042-724-7372)
	조달청 정보조달관리과	김은희 사무관(☎042-724-7154)
○부정당업자 제재(지방계약법)	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	양현진 사무관(☎044-205-3781) 이동하 주무관(☎044-205-3792)
○산업안전보건법 위반	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	류상훈 사무관(☎044-202-8938)
○벌점(하도급법)	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	김상윤 서기관(☎044-200-4586)
○환경전문공사업자(환경기술산업법)	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	장화영 사무관(☎044-201-6708)

<별지> 2022.8.15.일자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대상 확인 신청서

항목	기재사항		
① 업체명(상호)			
② 법인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		
③ 사업자번호			
④ 대 표 자			
⑤ 소 재 지(주소)			
⑥ 전화번호			
⑦ 보유업종 (전부 기재)			
⑧ 행정제재 내용	가. 처분기관		
	나. 처분대상업종		
	다. 제재처분유형		
	라. 제재처분일	년	월 일
	마. 제재처분기간	(처분시작일) 년 월 일	(처분종료일) 년 월 일
	바. 제재처분 근거법령		
	사. 제재처분 사유		
	아. 해제 필요사유		

(주) 가.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

나. 건축공사업, 토공사업,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및 개별법령에 따른 업종 기재

다. 영업정지처분, 부정당제재처분, 과징금처분, 과태료처분 등 기재

라.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

마.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

바.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(○○○○법 ○조 ○항 ○호)

사.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[시정명령(지시) 불이행, 실적미달,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]

아. 입찰제한사항 기재(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, 상호협력평가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)